

# 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2018. 6. 6.)

「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하 “권리장전”이라 한다)」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본교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임신과 출산 또는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④ 대학원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사항은 학업 및 연구 성과보다 우선한다.

**제3조(정의)** ① “대학원생”은 본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을 말한다.

② “학업 및 연구”는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③ “연구출판물”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중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제5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

저자로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7조(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을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4조(연구 및 학습에 대한 의무)** ① 대학원생은 학위취득과 연구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을 갖는다.

②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을 갖는다.

④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을 갖는다.

**제15조(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① 대학원생은 전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 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④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들을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중히 대우 할 책임을 갖는다.

#### 부 칙

이 권리장전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